## [별표 1]

## **사용료 기준**(제12조제2항 관련)

(단위: 원)

구 분	기 준	금 액	비교
가. 금정도서관 대강당	○ 1회 2시간 기준 (초과시간당)	40,000 (20,000)	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를 납부하여야 하 는 경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.
나. 금샘도서관 - 다목적 강당 - 전시공간	○ 1회 2시간 기준 (초과시간당)	20,000 (10,000)	
다. 냉、난방료	○ 1회 2시간 기준 (초과시간당)	25,000 (10,000)	

- 1)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보며,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
- 2) 평일 일과시간(09시~18시)을 제외한 시간, 주말은 사용료의 30% 가산
- 3) 1일(12시간 기준) 이상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%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